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교원노조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1. 7. 6.] [고용노동부령 제327호, 2021. 7. 6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 (공공노사관계과) 044-202-765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, 12, 14.]

- 제2조(조정 등의 신청) ①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(調停) 또는 중재(仲裁)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・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단체교섭의 경위
 - 2.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
 - 3.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
 -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 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, 12, 14.]

- 제3조(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)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」제2조 중 "고용노동부장관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"은 "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, 같은 규칙 제5조 중 "행정관청"은 각각 "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,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"행정관청(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)"은 "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으로, 같은 규칙 서식 중 "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, 시・도(시・군・구)"는 각각 "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"로, "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, 시・도지사(시장・군수・구청장)"은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"으로 본다. <개정 2021. 7. 6.>
 -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.<개정 2021. 7. 6.>

[전문개정 2011. 12. 14.]

부칙 <제327호,2021. 7. 6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